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6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0. ~ 2.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별표 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7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6일)

총계	1
일반직 계	1
6급 이하	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한시정원)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17조(한시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3